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008호, 2022. 10. 18. 일부개정, 2023. 1. 19. 시행)됨에 따라 항만에서의 위험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및 제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15. ~ 2023. 1. 1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4(위험물 관련 자료제출)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명 또는 선박번호 등 선박 식별을 위한 정보
2. 선박의 국내 입항일 및 입항항(港) 등 운항 정보
3.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목번호 등 위험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
4. 그 밖에 선박에 적재된 위험화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정보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“항만운영정보시스템”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4(위험물 관련 자료제출)</u>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선명 또는 선박번호 등 선박 식별을 위한 정보 2. 선박의 국내 입항일 및 입항 항(港) 등 운항 정보 3.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목번호 등 위험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4. 그 밖에 선박에 적재된 위험화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정보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“항만운영정보시스템”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